

제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5. 5. 16
- 나. 제안자 : 제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1995. 5. 17
- 라. 상정일자 : 1995. 5. 25 (제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모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그 위임받아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법령과 합치되도록 개정코자함.

나. 주요골자

- 주민세 균등할 개인세율 조정 - 지방세법 제176조에 의거
 - 동지역 : 1,500 → 1,800원(20% 인상)
 - 읍면지역 : 800 → 1,000원(25% 인상)
- 주민세의 납기규정 삭제 → 지방세법 직접 적용
- 구판사업 건축물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 규정을 75/100로 신설
- 기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문안 개정 다수

3. 근거법령

지방세법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법적검토

모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이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으로서의 자치법규인 조례의 개정은 법령 및 관련조례와 연관 검토 한바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○ 행정적검토

주민세의 경우 균등할 개인세율이 시(동)지역 경우 1,500원에서 1,800원으로 20% 상향되었고, 군(읍면)지역이 경우 800원에서 1,000원으로 25% 상향조정되어 인상폭이 큼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 소지는 있으나 법정사항으로 조례상 달리 조정이 불가하며 그외 특이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및 답변요지

가. 질의요지

- 제19조 1항의 구판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100분의 50보다 25%를 더 경감시킨 100분의 75로 재정하는 이유는?

나. 답변요지

- 지방세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구판사업용 건축물의 경감율을 100분의 75로 규정
- 6. 25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대상자가 없기 때문임.

6. 심사결과

원 안 가 결

7. 심사보고서 유첨서류

- 제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1부.
- 신구조물대비표 1부.
- 참고사료 1부.